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4절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절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공원의 계획·조성·유지관리 기준

3-4-1. 내지 3-4-2.를 다음과 같이 한다.

3-4-1. 도시공원을 계획·조성·관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일반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자연적 감시 : 내·외부에서 시야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계획·조성·관리
- (2) 접근통제 : 이용자들을 일정한 공간으로 유도 또는 통제하는 시설 등을 배치
- (3) 영역성 강화 : 공적인 장소임을 분명하게 표시할 수 있는 시설 등을 배치
- (4) 활용성 증대 :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들이 다양한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등을 배치
- (5) 유지관리 : 안전한 공원환경의 지속적 유지를 고려한 자재선정 및 디자인 적용과 운영·관리

3-4-2. 도시공원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계획·설치·관리하여야 한다.

- (1) 공원계획은 식재수목이나 시설물이 이용자의 시야를 가능한 방해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 (2) 공원의 출입구는 도로나 주변의 건물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이용자의 동선을 명료하게 하여 이용성을 높이도록 유도한다.
- (3) 공원의 경계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난간이나 투시형 펜스를 사용하고, 생울타리로 공원경계를 구분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시야가 확보되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 (4) 수목은 교목과 관목이 주변의 시야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수목성장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관리하여야 한다.
- (5) 수목은 항상 정돈·관리되어야 하고 이용자에게는 방향성을 제시하며, 숨을 수 있는 공간,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배식하여야 한다.
- (6) 공원에 설치하는 안내시설물은 통행이 잦은 공원의 출입구 주변 및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하여 이용자의 위치파악이 용이하도록 하고, 설치장소의 주변 환경요소와 시각적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7) 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에서 가까운 장소 등 주위로부터 시야가 확보된 장소에 설치하고, 화장실 출입구는 다른 공공장소에서 잘 보이도록 배치하며, 화장실 입구 부근 및 내부는 사람의 얼굴·행동이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도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 (8) 관리사무소는 이용자의 행위를 감시하기에 적절한 공원출입구 등에 배치하고 감시가 용이한 디자인을 고려하도록 한다.
- (9) 공원의 의자 등 휴게시설은 가로등·보행등이 설치되어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고, 사회적 일탈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디자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 (10) 의자, 쓰레기통, 표지판 등 공원시설물은 파손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디자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 (11) 조명은 도시공원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배치를 하되 적절한 조도를 유지하여 안전감을 높여야 한다.
 - (가) 산책로 주변에는 유도등이나 보행등을 설치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안감을 감소시켜야 한다.
 - (나) 수목이나 공원시설물 등에 의하여 조명시설이 가리지 않도록 배치하고 관리되어야 한다.
 - (다) 공원입구, 통로, 주차장, 표지판, 주요활동구역에는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쉽게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 (라) 조명시설은 설치위치를 고려하여 파손 예방 디자인을 고려

하여야 한다.

(12)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은 공원의 입구 등 감시의 기능이 필요한 위치와 공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키는 위치에 설치하고, 야간활용을 위하여 조명도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도시공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지침의 범 죄예방을 위한 도시공원의 계획·구성·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점검하고 시설 등의 보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신 설 ></p>	<p>제4절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공 원의 <u>계획 · 조성 · 유지관리 기준</u></p>
<p>< 신 설 ></p>	<p>3-4-1. 도시공원을 <u>계획 · 조성 · 관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일반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u></p> <p>(1) <u>자연적 감시 : 내 · 외부에 서 시야가 최대한 확보되도 록 계획 · 조성 · 관리</u></p> <p>(2) <u>접근통제 : 이용자들을 일 정한 공간으로 유도 또는 통 제하는 시설 등을 배치</u></p> <p>(3) <u>영역성 강화 : 공적인 장소 임을 분명하게 표시할 수 있 는 시설 등을 배치</u></p> <p>(4) <u>활용성 증대 : 다양한 계층 의 이용자들이 다양한 시간 대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등을 배치</u></p> <p>(5) <u>유지관리 : 안전한 공원환 경의 지속적 유지를 고려한 자재선정 및 디자인 적용과</u></p>

< 신 설 >

운영 · 관리

3-4-2. 도시공원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계획 · 설치 · 관리하여야 한다.

(1) 공원계획은 식재수목이나 시설물이 이용자의 시야를 가능한 방해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2) 공원의 출입구는 도로나 주변의 건물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이용자의 동선을 명료하게 하여 이용성을 높이도록 유도한다.

(3) 공원의 경계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난간이나 투시형 펜스를 사용하고, 생울타리로 공원경계를 구분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시야가 확보되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4) 수목은 교목과 관목이 주변의 시야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수목성장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 관리하여야 한다.

(5) 수목은 항상 정돈·관리되어야 하고 이용자에게는 방향성을 제시하며, 숨을 수 있는 공간,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배식하여야 한다.

(6) 공원에 설치하는 안내시설물은 통행이 잦은 공원의 출입구 주변 및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하여 이용자의 위치 파악이 용이하도록 하고, 설치장소의 주변 환경요소와 시각적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에서 가까운 장소 등 주위로부터 시야가 확보된 장소에 설치하고, 화장실 출입구는 다른 공공장소에서 잘 보이도록 배치하며, 화장실 입구 부근 및 내부는 사람의 얼굴·행동이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도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8) 관리사무소는 이용자의 행위를 감시하기에 적절한 공

원출입구 등에 배치하고 감시가 용이한 디자인을 고려하도록 한다.

(9) 공원의 의자 등 휴게시설은 가로등·보행등이 설치되어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고, 사회적 일탈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디자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의자, 쓰레기통, 표지판 등 공원시설물은 파손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디자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11) 조명은 도시공원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배치를 하되 적절한 조도를 유지하여 안전감을 높여야 한다.

(가) 산책로 주변에는 유도등이나 보행등을 설치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안감을 감소시켜야 한다.

(나) 수목이나 공원시설물 등에 의하여 조명시설이 가리지 않도록 배치하고 관리되어야 한다.

(다) 공원입구, 통로, 주차장, 표지판, 주요활동구역에는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쉽게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라) 조명시설은 설치위치를 고려하여 파손 예방 디자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12)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은 공원의 입구 등 감시의 기능이 필요한 위치와 공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키는 위치에 설치하고, 야간 활용을 위하여 조명도 설치하여야 한다.